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2. 16 선고 2020가단84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은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우종태, 이양원, 이향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네라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F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13,280,472원, 원고 B에게 8,853,648원, 원고 C에게 8,853,6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F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4,841,506원, 원고 B에게 3,227,671원, 원고 C에게 3,227,6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망 G은 2014. 5.경 F의 권유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받아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F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지 못하여 그 투자 약정이 실행되지 못한 사실, 이에 F이 투자금 2억 원을 대여금으로 변경하여 매월 그에 관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던 중 위 G이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 및 아들들인 원고들이 F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F은 2017. 11. 16.경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이에 기해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6. F은 원고들에게 위 2억 원을 각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 F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끌어 써 횡령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수감되기도 하였으며 위 2017.경에도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F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11. 7.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사업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D 명의의 H은행 및 I은행 계좌로 합계 30,987,767원을 증여하였고, 2018. 2. 2.부터 2019.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의 아들인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합계 11,296,848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F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증여받은 위 각 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2014.경 있었던 F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다가 제소기간이 문제되자 2017.경 이후의 증여행위 취소를 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이 피고들의 본안에 관한 응소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서 특별히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본안에 관한 응소 이후 사해행위를 보다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를 정정 내지 보충한 것이어서 엄격한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들의 앞선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앞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F이 일부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그와 같은 각 금전거래가 F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피고 D은 사업 관계로 아는 사이이지만 배우자이거나 좀 더 친밀한 관계라고 볼 사정은 없는 점, 여러 가지 금전 문제가 많던 F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별지 목록 기재 거래 전후로 F의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로 보이는 내역들 또한 많이 발견되고, F의 지인들 역시 별지 목록 기재 계좌를 이용하여 F과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F이 피고 D이나 아들인 피고 E에게 특별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증여를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개인 거래로 보이는 내역도 없지 않으나 그것이 반드시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출처로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개개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모두 F과 피고들 사이의 객관적 의사합치 하에 송금된 것임을 추인할 만한 다른 근거가 사실상 없는 점 등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증명부족을 이유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정대

[별지]

목록 1

연번	거래일자	입금금액	거래내용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1	2017-11-07	490,000		은행
2	2018-01-04	90,000		*
3	2018-01-25	400,000		*
4	2018-03-05	450,000		*
5	2018-04-25	450,000		*
6	2018-08-08	16,755,767		*
7	2018-08-20	500,000		*
8	2018-11-16	1,000,000		*
9	2018-11-16	290,000		*
10	2018-11-17	33,000		*
11	2019-05-10	10,000,000		*
12	2018-04-06	430,000		은행
13	2018-04-06	99,000		*
	합 계	30,987,767		

[별지]

목록 2

연번	거래일자	입금금액	거래내용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1	2018-02-02	300,000		은행
2	2018-06-21	2,276,848		*
3	2018-10-27	100,000		*
4	2019-01-23	5,000,000		*
5	2019-05-20	1,450,000		*
6	2019-05-24	1,450,000		*
7	2019-06-24	200,000		*
8	2019-10-07	520,000		*
	합 계	11,296,848		

